

붙임1)

동구미농협 공고 제2026-6호

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수수료매장 및 임대매장 입점업체 모집공고

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수수료매장 및 임대매장 입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공고사항

가. 공고명 : 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수수료매장 및 임대매장 입점업체 모집공고

나. 사업장위치 : 경북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345

(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內)

다. 모집대상 업종

○ 수수료매장

모집업종	면적(m ²)	보증금	수수료율	비고
즉석식품코너 (델리 등)	11.52 (약 3.4평)	협의 후 결정		◎ 농협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◎ 운영제안자가 실제로 경영할 것

* 작업장 면적만 표기, 매장 내 진열용 쇼케이스 제공

○ 임대매장

모집업종	면적(m ²)	보증금	월 임대료	비고
무관 (단, 판매시설 내 가능업종)	20.44 (약 6.0평)	협의 후 결정		◎ 농협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◎ 운영제안자가 실제로 경영할 것 ◎ 프랜차이즈 우대

* 입점추천업종 : 로또, 세탁소, 분식 등

* 수도광열비 별도 납부 / 인테리어 및 집기비용은 입점업체 부담

* 제안서 제출 전 매장 실사를 통한 위치 및 면적, 시설현황 등을 필히 확인하시 바랍니다.

2. 계약방법, 계약기간 및 거래방법

가.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(선정업체와 협의 후 결정)

나. 거래방식

- 수수료매장 : 시설보증금, 특약매입 (협의 후 결정)
 - ▷ 특약매입 : 매출액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대금 지급
- 임대매장 : 임대보증금, 월 임대료 (협의 후 결정)

3. 선정일정 및 접수방법

- 가. 모집공고 : 2026.03.17.(화) ~ 03.25.(수)
- 나. 서류접수 : 2026.03.17.(화) ~ 03.25.(수)
- 다. 업체심사 : 2026.03.26.(목) ~ 03.27.(금)
- 라. 선정업체 통보 : 2026.04.01.(수) (개별통보)
- 마. 모집공고 장소 : 아리오피스, 동구미농협 홈페이지 및 본·지점 게시판
- 바. 접수방법 : 본인 방문접수 (**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**)
- 사. 접수장소 : 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사무실 (☎ 054-471-4579)
(경북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345)
- 아. 당 농협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

4. 선정기준

- 가.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, 운영제안서에 의한 심사로 당 농협과 상생할 수 있는 업체 선정 (제안 설명을 듣고 영업전략 등이 우수한 업체 우대)
- 나. 당 농협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
- 다. 입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(사업계획서 등)를 상품구매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사
- 라. 심사결과에 따라 입점 계약 조건 합의 후 최종 입점 대상자로 선정

5. 참가자격

- 가.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(개인사업자) 또는 법인으로서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(입점운영 제안서)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
- 나. 수수료(임대)사업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있는 개인(개인사업자) 또는 법인
- 다. 농협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고, 실제로 경영할 개인(개인사업자) 또는 법인

6. 참가의 제한

- 가. 사업(사업예정인 자 포함)의 종류(업태, 종목)가 용도를 벗어난 업종 및 시설 노후화 등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
- 나. 당 농협 사업과 경업관계에 해당하는 사업(사업예정인 경우 포함)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함

다. 운영제안자(입점업체)가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경우는 참가를 제한함

7. 제출서류

- 가. 운영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
- 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1부
- 다. 대표자신분증
- 라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마. 인감증명서(또는 법인인감증명서) 1부
- 바. 주민등록등본(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1부
- 사.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.
- 아. 기타 경력 및 실적(매출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자유양식) 1부

8. 입점업체 결격 사유

가. 입점업체 선정 시 결격 사유

- 국세·지방세를 미납하거나 강제집행(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) 진행 중인 사업자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을 취급하거나 행위를 한 사업자
- 가맹본사 추천서를 미제출한 사업자(가맹사업자만 해당)

나. 입점업체 선정 후 계약해지 사유

- 사업계획서 및 운영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
- 매출실적 및 기여도가 저조하거나 임대료(수수료)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식품위생법규 위반이나 당 농협 위생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
- 상품이 불량하거나 지정품목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경우
- 거래신용을 상실하여 거래업체로서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
- 농협 승인 없이 매장 운영 권리를 양도·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
- 당 농협 사업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 발생 및 운영 중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

9. 입점업체 주의사항

- 가.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및 휴일을 당 농협 하나로마트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함
(불가피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기재해야함)
- 나. 수수료매장 및 임대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입점업체는 용도외 사용이 불가함
- 다. 최종 선정업체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험(일반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등)
을 당 농협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
(단, 농협에 취급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타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해야 함)
- 라. 영업 관련 거래통장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이체는 당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야 함

- 마.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·허가 절차는 당 농협과 협의하여 입점업체에서 취득함
- 바. 동구미농협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아야 하며, 이와 관련한 농협의 시정이나 개선요구 시 즉각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함
- 사. 입점신청자는 사업계획서등 서류제출 전 반드시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주변여건, 해당상권, 행정상의 규제,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해당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를 소홀히 할 시 모든 책임은 입점신청자에게 있음

11. 기타사항

- 가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절차와 평가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음
- 나.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모집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
- 다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된 이후에라도 무효처리 됨

2026년 03월 17일

 동구미농협 하나로마트 